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. 8. 10 선고 2023가합61 판결 [시효연장을 위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 주식회사

변 론 종 결 2023. 7. 20.

판 결 선 고 2023. 8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36,231,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5. 24.부터 2023. 7. 7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재판장 판사 이성진, 판사 정선희, 판사 박채은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, 재판장, 판 사

청 구 원 인

1. 공사대금에 대한 확정판결

가.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3612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. 07. 17.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(갑제1호증의1 판결정본)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36,231,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5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나. 한편 피고에게 위 판결이 2013. 7. 22. 송달되었음에 위 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2013. 8. 6.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(갑제1호증의2 송달/확정증명원)..

2. 청구내역

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의한 공사대금 536,231,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5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, 피고는 위 판결 선고이후 10년이 다 되어감에도 아직까지 그 돈을 변제하지 않고 묵살하며 2014. 6. 20. 본점을 '경

기도 시흥시 C, D 호로 변경하였으나 '사실상 폐업'하여 현재 피고회사는 회사증기부상 2020. 12. 07. '해산간주'처리 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는바(갑제2호증의1,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), 그사이 소멸시효 완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,

피고의 위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청구채권은,

(1)공사대금 금 536,231,810원과,

(2)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일까지는 위 확정판결정본에 의하여 연20% 비율에 의한,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연12% 비율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